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유은혜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관할청의 휴업명령 및 휴업처분에 대하여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,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 등의 상황에서 등원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원격수업 등 대체수업으로는 유아의 발달 특성 상 유치원교육과정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 조치를 하고자 함

이에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원장에게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에 원장은 그 휴업 명령 또는 휴원처분에 따라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(안 제12조제1항제2호)

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,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는 근거 마련

나.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(안 제12조제1항제3호)

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하지 않는 근거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단서 중 “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,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”를 “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의 후단 중 “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”를 “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,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,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.
2. 관할청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원처분을 한 경우, 원장은 그 휴업명령 또는 휴원처분에 따라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.
3. 제1호와 제2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는 수업일수 산정 시 제1호와 제2호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령에 관한 특례) 제2조(수업일수에 관한 특례) 2020년 3월 1일

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의 학년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관할청의 휴업명령 및 휴원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수업일수 등)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. 다만,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,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	제12조(수업일수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. ---- 다 <u>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
<신 설>	1.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,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,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.
<신 설>	2. 관할청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원처분을 한 경우, 원장은 그 휴업명령 또는 휴원처분에 따라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.
<신 설>	3. 제1호와 제2호의 사유가 동

	<u>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는</u> <u>수업일수 산정 시 제1호와 제</u> <u>2호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</u> <u>는다.</u>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유아교육정책과	
연 락 처	044-203-6556